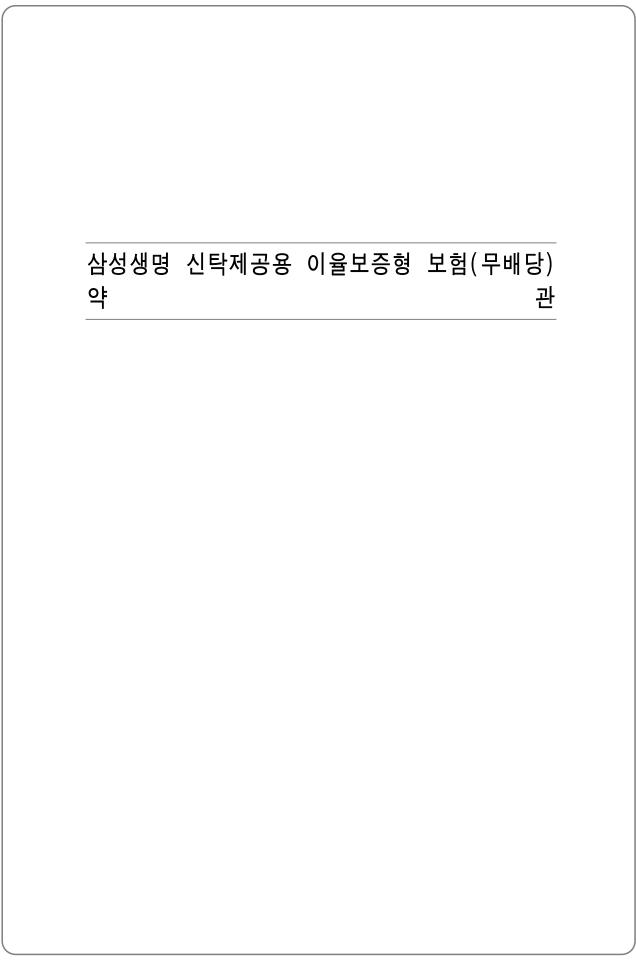
삼성생명 신탁제공용 이율보증형 보험 (무배당)









# 삼성생명 신탁제공용 이율보증형 보험(무배당) 약관

# 제1조 (목 적)

이 약관의 목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(이하 '법'이라 합니다) 제29조에 따라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일환으로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(이하 '회사'라 합니다)와 삼성생명 신탁제공용 이율보증형 보험(무배당)계약(이하 '계약'이라 합니다)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.

# 제2조 (용어의 정의)

-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1.'신탁업자'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에 의해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탁회사를 말합니다.
- 2. '부담금'이라 함은 신탁업자가 계약자로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.
- 3.'보험금'이라 함은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에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단위보험의 적립금을 말합니다.
-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(이하 "시행령", "시행규칙"이라 합니다)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# 제3조 (보험계약자,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)

이 계약의 보험계약자(이하 '계약자'라 합니다),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는 신탁업자로합니다.

### 제4조 (신탁업자의 수행업무)

- ① 신탁업자는 운용관리기관(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)이 전달한 가입자(법 제2조11호에서 정한 가입자로 이하 '가입자'라 합니다) 또는 사용자(법 제2조2호에서 정한 사용자로 이하 '사용자'라 합니다)의 운용지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·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② 신탁업자는 계약의 체결,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.

### 제5조 (회사의 수행업무)

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.

- 1. 부담금의 수령
- 2. 적립금의 운용
- 3.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의 지급
- 4. 기타 필요한 사항

#### 제6조 (계약의 성립)

-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(請約)과 회사의 승낙(承諾)으로 이루어집니다.
-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즉시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. 다만, 전문(電文)을 통한 전자적 거래 시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# 제7조 (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등)

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(청약서 부본)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. 다만, 전화/우편/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(이하 "통신판매 계약"이라 합니다)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계약자 보관용 청약서(청약서 부본)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(청약서 부본)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,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(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)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. 또한,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, 부담금납입, 보험기간,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,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.

# 제8조 (보험기간)

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회사의 승낙이 이루어진 때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.

# 제9조 (부담금의 납입)

-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부담금을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따라 보장을 합니다.
- ②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.

# 제10조 (단위보험 및 단위보험의 재설정)

- ① 이 계약에서 "단위보험"이라 함은 계약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각각의 부담금 납입건별로 설정된 구좌를 말하며,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"이율보증기간"이라 합니다.
- ② 계약자는 부담금 납입시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 중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(1년, 2년, 3년 또는 5년)을 설정하며,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에 회사가 결정한 각 단위보험별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이 계약의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.
- ③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에 회사와 이 계약을 운용 지시한 운용관리기관과의 상품제공 업무협약이 유효한 경우, 계약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.
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 운 단위보험을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하며,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 형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별 적용이율로 합 니다.
- ⑤ 이 계약의 업무협약 만료시점에 이율보증기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, 계약자의 별도 해지 요청이 없으면 각 단위보험은 각 단위보험별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까지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각 단위보험에 대해 업무협약 만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까지 계약자의 별도 해지요청이 없는 경우,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을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하며,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별 적용이율로 합니다.

# 제11조 (적용이율)

- ① 신탁제공용 이율보증형 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퇴직연금제도별로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하며,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합니다.
-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제1항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표금리(국고채 수익률, 회사채 수익률/지방채 수익률)로 산출된 기준이율에서 시장상황, 회사손익 및 부담금 속성 등을 고려하여 각 단위보험별로 납입하는 부담금 규모에 따라 기준이율의 80%~최대195% 범위내에서 단위보험 설정일에 결정합니다. 단,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시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, 적용이율은 산출된 기준이율의 80%를 최저한도로 합니다.
- ③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제1항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표금리(국고채 수익률, 회사채 수익률/지방채 수익률)로 산출된 기준이율에서 시장상황 및 회사손익 등을 고려하여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결정합니다. 단,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시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, 적용이율은 산출된 기준이율의 80%를 최저한도로 합니다.

< 이율보증형 기준이율 >

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율보증형 1,2,3년형의 경우 국고채(3년만기) 수익률, 회사채(1년만기/2년만기/3년만기,무보증,AAA) 수익률, 5년형의 경우 국고채(5년만기) 수익률 , 지방채(5년만기) 수익률을 혼합한 이율을 말합니다.

※ 1년 이율보증형 기준이율(%) = A1×0.7 + A2×0.3

·A1 : 국고채(3년만기) 수익률의 평균값

· A2 : 회사채(1년만기,무보증,AAA) 수익률의 평균값

2년 이율보증형 기준이율(%) = A1×0.7 + A2×0.3

· A1 : 국고채(3년만기) 수익률의 평균값

·A2 : 회사채(2년만기,무보증,AAA) 수익률의 평균값

3년 이율보증형 기준이율(%) = A1×0.6 + A2×0.4

· A1 : 국고채(3년만기) 수익률의 평균값

·A2 : 회사채(3년만기,무보증,AAA) 수익률의 평균값

5년 이율보증형 기준이율(%) = A1×0.6 + A2×0.4

·A1 : 국고채(5년만기) 수익률의 평균값

· A2 : 지방채(5년만기) 수익률의 평균값

- ④ 이율체계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적용이율의 산출 방식을 변경 할 수 있으며, 산출방식 변경시 변경전 계약에도 적용합니다. 단, 변경전 계약의 경우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이후부터 적용합니다.
- ⑤ 회사는 연2회 이상 적용이율의 변경내역을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(e-mail, 전자문서, Web 등)으로 통지합니다.
- ⑥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최저보증을 하지 않습니다.

#### 제12조 (계약의 해지)

-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②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보험수익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.

# 제13조 (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)

- ① 회사는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보험수익자게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.
- ② 회사는 계약자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.
-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에게 알리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율보증형 적용이율+1%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.

# 제14조 (해지환급금)

① 해지환급금은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출하며,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다음에서 정하는 중도해지이율을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.

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
각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경과기간	이율보증형 중도해지이율
90일 미만	0.1%
180일 미만	0.5%
1년 미만	1.0%
2년 미만	「적용이율의 50%」와 「1.0%」 중 높은 이율
3년 미만	「적용이율의 50%」와 「1.0%」 중 높은 이율
4년 미만	「적용이율의 60%」와 「1.0%」 중 높은 이율
5년 미만	「적용이율의 70%」와 「1.0%」 중 높은 이율

② 단, 급여(법 제2조5호에서 정한 급여로 이하 '급여'라 합니다)의 지급인 경우 또는 가입자가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
### 제15조 (해지시 구비서류)

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청구서(회사양식)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## 제16조 (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)

회사는 본 계약을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퇴직연금 이율보증형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합니다.

#### 제17조 (배당금의 지급)

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.

# 제18조 (소멸시효)

부담금 반환청구권,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.

# 제19조 (분쟁의 조정)

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 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 제20조 (관할법원)

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(법인인 경우 본점 소재지)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. 다만, 회사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.

#### 제21조 (약관의 해석)

-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.
-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.
-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.

# 제22조 (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)

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(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)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.

# 제23조 (회사의 손해배상책임)

-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,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,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.
-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
-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

#### 제24조 (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)

이 계약은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. 단,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
#### 제25조 (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)

-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않은 계약이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.
-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13조(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)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.

#### 제26조 (준거법)

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,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,

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.

# 제27조 (약관의 변경)

이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자에게 변경내용을 통지하고 30일(비영업일 포함) 이내에 계약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 이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(비영업일 포함)이 경과한 첫 영업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. 다만,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거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, 변경일로부터 30일(비영업일 포함) 이내에도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

# 부 칙

# 제1조 (시행일)

이 약관은 2014년 9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.

# 제2조 (경과조치)

이율보증형 상품 단위보험의 설정일이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(2014년 9월 5일) 이전인 경우에는 해지환급금 계산 시 시장가격조정률(MVA, 별표 1 참고)을 적용하며, 시행일(2014년 9월 5일) 이후에 이율보증기간 만기가 도래되어 재설정되거나 새롭게 단위보험이 납입되는 경우 해지환급금 계산 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.

(별표1)

# 시장가격조정률

1. 이율보증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장가격조정률(MVA)을 적용합니다.

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적립금에 (1- 시장가격조정률)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합니다. 단, 급여의 지급인 경우 또는 가입자가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조정률(MVA)를 '0'으로 합니다.

2. 시장가격조정률(MVA: Market Value Adjustment)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.

[1년 이율보증형 MVA]

$$MVA = 1 - \left(\frac{1 + i_j}{1 + i_h}\right)^{n + \epsilon/\eta}$$

MVA의 최대한도는 5%, 최소한도는 0%로 합니다.

[2년, 3년, 5년 이율보증형 MVA]

$$MVA = 1 - \left( \frac{1 + i_j}{1 + i_h + 0.5\%} \right)^{n + \epsilon/\eta}$$

MVA의 최대한도는 10%, 최소한도는 0%로 합니다.

㈜ ① 잔여보증기간 : 단위보험 해지일부터 단위보험 이율보증기간 말일까지 기간

- n : 잔여보증기간의 연단위기간

- ε : 잔여보증기간의 연미만 일단위기간

- n : 365 또는 366

② i; : 해당 단위보험 설정시점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기준이율

③ i<sub>h</sub> : 잔여보증기간에 해당하는 해지시점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기준이율 (소수점 4째자리에서 반올림)

- 잔여보증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: iʰ = i⊦· + (i⊬· - i⊦·) × m' / (12×n')

└ 잔여보증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: iь = iыı

- 잔여보증기간에 가장 가까운 이율보증기간 중

•  $i_{\mathbb{H}}$  : 잔여보증기간보다 작거나 같은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해지시점 적용이율의 기준이율

· i<sub>M</sub> : 잔여보증기간보다 크거나 같은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해지시점 적용이율의 기준이율

- n' : i<sub>h-1</sub> 이율보증기간부터 i<sub>h+1</sub> 이율보증기간까지의 연단위 기간

- m' : i<sub>h-1</sub> 이율보증기간부터 잔여보증기간까지의 월단위 기간 (월미만 절상)

3. 해지환급금은 시장가격조정률(MVA)을 적용하여 적립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.